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5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1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4. 11.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11. 2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행정과장 김종완)

가. 개정이유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장의 임무에 도우미 역할 신설(안 제2조)
 -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
- 찾은 조례개정 사전 예방 등 업무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특정 수당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삭제와 불필요한 문구 정비(안 제4조)
-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사기진작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규정 마련(격년 지원)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지원사업)

2) 예산조치: 2025년 당초예산 반영(31,800천 원)

3) 협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5646, 2024. 9. 6.)

4) 기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1436호

- 예고기간: 2024. 9. 10. ~ 2024. 9. 30.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장의 임무 추가(안 제2조)

-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였음

- 실비지급(안 제4조)

- 특정 수당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였음

- 사기진작(안 제6조)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와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른 임무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장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보다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11. 27.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